

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방문요양)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8호
(2014. 9. 19. 개정)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000 (인)	등 급 (인정번호)	등급 L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-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50%경감대상자 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건강플러스 재가방문요양센터	시설종류	방문요양
	시설장 성명	오선주 (인)	연락처	02-6014-1388
	주 소	경기도 광명시 안재로6번길 12 102호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000 (인)	관 계	'갑'의 ()
	생년월일		연락처	자택) 이동전화)
	주 소			
계약내용	1일 180분 총 수가	공단부담금(85%)		본인부담금(15%)
	55,350원	47,047원		8,303원
	본인부담금	8,303원 X 20일이용 = 166,060원		

제1조(목적)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(계약기간)

- ①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 년 12 월 31까지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급여범위) 방문 요양급 여는 장기 요양 요원이 ‘갑’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.

제4조(급여이용 및 제공)

- ① 방문 요양 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(제공)계획서에 의한다.
- ② ‘갑’의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.

구분	이용 요일	이용 시간	
이용 시간 (1)	☐ 월 ☐ 화 ☐ 수 ☐ 목 ☐ 금 ☐ 토 ☐ 일	오전	09 시 00 분 ~ 12 시 00 분
		오후	시 00분 ~ 시 분

- ※ 요일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 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
- ※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 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‘을’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.
- ③ ‘을’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1일 2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.

구분	월	화	수	목	금	토	일	비고
이용시간1								※ 이용 시간 2는 1일 2회 이용 할 경우 기재함
이용시간2								

- ④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3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야간(18:00~22:00), 심야(22:00~06:00)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야간 20%, 심야 30%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⑥ 야간.심야.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.
- ⑦ ‘을’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‘갑’(또는 ‘병’)과 협의하여 당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.

제5조(계약자 의무)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월 이용료 납부
 - 2. 방문 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
 - 3.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 - 4. 기타 ‘을’과 협의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- 1. 방문 요양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
 - 2. 급여 제공 중 ‘갑’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‘병’에게 통보
 - 3. 급여 제공 시간에 ‘갑’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
 - 4.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‘갑’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 유지 (단,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)
 - 5. 이용 상담,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

6.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
7. 기타 '갑'(또는 '병')의 요청에 협조
- ③ '병'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1. '갑'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2. '갑'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
 3. 인적 사항 및 장기 요양 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'을'에게 통보
 4. '갑'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'을'에게 통보
 5. 기타 '을'의 협조 요청 이행

제6조(계약해지 요건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다음 각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'을'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 2. 제3조의 방문 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3. 제4조 제 2항의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을 '갑'(또는 '병')의 동의 없이 '을'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 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
 4. 기타 '갑'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② '을'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 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
 2. '갑'이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
 3. '갑'의 건강진단 결과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 4. '갑'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
 5.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'갑'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
 6. '갑'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 요양 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

제7조(계약의 해지)

- ① '갑'(또는 '병')은 제6조 제1항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.
- ② '을'은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'갑'과 '병'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.

제8조(이용료 납부)

- ① 방문 요양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'을'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6일에 정산하고 '갑'(또는 '병')에게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한다.
- ③ '갑'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246601-04-478147 납부 한다.
다만, 납부일이 공휴일 인 경우 에는 그 익일로 한다.
- ④ '을'은 '갑'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.

제9조(재계약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.

1.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 된 경우
2. 장기 요양 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
3.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이 변경 된 경우
4. 기타 '갑'과 '을'이 필요한 경우

제10조(건강관리)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'갑'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11조(위급 시 조치)

- ① '을'은 방문 요양 급여 제공 시간에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,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서비스 이용 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'을'은 즉시 '병'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'갑'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②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③ '을'은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 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④ '을'은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갑'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3조(기록 및 공개) '을'은 '갑'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'갑'(또는 '병')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상책임)

- ① '을'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.
 1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장기요양요원(또는 '을')의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 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갑'(또는 '병')은 '을'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
 2. '을'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3.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
 4. '갑'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5조(기타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'갑'(또는 '병')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.

2025 년 1 월 1 일

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'갑'과 '병'에게 제공하였습니다.

'을' 시설장 오선주 (인)

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.

'갑' 이용자 000 (인)

'병' 대리인(보호자) 000 (인)

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
성 명 : (생년월일 :)

주 소 :

1. 수집대상정보

-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
-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
-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

2. 수집정보의 활용범위

-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
-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
-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
- 장기요양계획, 욕구조사,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

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이 용 자 : (인)